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 선발규정

2020.7.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항 제7조에 따라 우수한 골프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또는 “KGA“라 한다)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국가상비군은 주니어국가상비군을 포함한 국가상비군선수 및 국가상비군지도자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국가대표선수에는 “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국가대표지도자 및 국가상비군지도자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훈련기간,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협회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주니어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선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시도협회 포함) 및 산하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5. 성추행, 성희롱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6. 협회(시도협회 포함) 및 산하연맹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7.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8. 스포츠공정위원회(연맹체 및 시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해당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로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선발구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초등부 제외)
2. 주니어국가상비군 (5~6학년 초등부)

제7조(특별선발)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 선수선발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장의 승인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시기) 선수 선발은 당해연도 10월~11월 중에 제11조(선발방법)에 의거 선발한다.

제9조(선발인원) 선발 인원은 다음의 정수로 한다.

구 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주니어국가상비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남 자	6명	5명	8명	6명	3명
여 자	6명	5명	8명	3명	3명
계	12명	10명	16명	9명	6명

제10조(선발대회와 배점) ① 선발대회는 협회 및 연맹(초등,중고,대학)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협회 승인대회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선정과 폐지, 배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선발대회 및 배점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 배점은 별표에 따른다.

배 점	선 발 대 회
	국내대회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 ·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인순위 ·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 빛고을배중흥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 박카스배 SBS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개인전 ·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골프대회 ·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 한국대학골프연맹회장배 대학 대항 골프대회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건스매치플레이 · 초·중·고, 대학 연맹 주최·주관 승인 대회 (단, 당해연도 사업승인 대회에 한함) · 시도협회장배 (주1: 점수부여방법등 KGA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회) (주2: 대학부, 일반부 제외)

③ 상기 제2항의 선발대회 중 연맹 및 시도골프협회 주관 대회가 당 협회(대한골프협회) 주관 대회 일자(본경기)와 중복되는 경우 선발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협회 주관 대회 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어 연맹 또는 시·도협회 대회일자와 중복되거나, 부별(남자부, 여자부) 일정이 틀릴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대회를 선발대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별표의 순위별 점수 분배 시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인원수만큼 나눈 뒤(소수점 반올림) 동순위자에게 각각 부여한다. 단, 최저순위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저점수를 해당 선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제11조(선발방법) ① 국가대표는 제3항에 따라 우선선발한 후 제4항의 선발전을 통해 선발한다.

② 국가상비군은 아래 제5항에 따라 선발하며, 주니어국가상비군은 제10조제2항에

나열된 대회에서 획득한 합산 점수의 상위 순으로 선발한다.

③ 국가대표 우선선발

1. 우선선발 인원은 남녀 각 3명이며, 선발방법은 선발전 지정대회에서 획득한 합산점수의 상위 순으로 선발한다. 단, 합산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만 선발한다. 기준점수는 선발전 지정대회별 6위에 대한 배점의 합을 말하며, 당해연도에 개최된 대회에 한한다.
2.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합산점수에 산입된 수가 적은 선수가 우선한다.
3. 대회참가 수가 동일할 경우 동점자 모두 참가한 선발전 지정대회 중 최근 대회 성적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성적 비교는 비교 대상 대회에서 정한 카운트백 방식 적용)
4. 국가대표 우선선발은 선발전 지정대회 4개 이상 개최시 적용되며, 4개 미만 개최시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④ 국가대표 선발전 :

1. 아래 대상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자 격	남 자	여 자
당해연도 국가대표	약간 명	약간 명
선발전 지정대회 합산점수 상위자	6명	6명
월드랭킹 50위 이내	약간 명	약간 명
KGA 주관 오픈대회 5위 이내	약간명	약간명

주1) 선발전 지정대회 합산점수 상위자 중 우선선발 및 프로전향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선발전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주2) 당해연도 국가대표가 선발전 지정대회 합산점수 상위자 또는 월드랭킹 50위 이내, KGA 주관 오픈대회 5위 이내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경우, 그 선수는 다수의 선발전 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그 선수를 제외한 차순위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주3) 월드랭킹 반영 기준일은 선발전 개최 4주전으로 정한다.

2. 선발전 지정대회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대 회 명	대회수
남 자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빛고을배중흥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구 호심배),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중등)체육대회 개인전	7
여 자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빛고을배중흥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구 호심배),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중등)체육대회 개인전	8

주) 선발전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시 필히 소속 시도협회장의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 확인(직인)이 누락된 경우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3. 선발전 일정이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전 조건을 발표하여야 한다.
4. 국가대표 선발전은 선발전 지정대회 4개 이상 개최시 적용되며, 4개 미만 개최시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⑤ 국가상비군 선발

1. 국가상비군은 제10조제2항의 대회에서 획득한 합산 점수의 상위 순으로 제9조의 정원에 따라 선발한다.
2. 부별 정원에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들이 포함되더라도 그 인원수를 제외하여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 단, 프로전향예정자가 정원(순위)에 포함될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3. 합산 점수는 대회에서 획득한 상위 점수순으로 최대 10개를 산입한다.
4.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합산 점수에 산입된 대회 수가 적은 선수가 우선한다. 합산 점수와 대회참가 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단, 합산 점수가 100점 미만일 경우 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선발하지 않는다.

⑥ 제3항~제5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결과가 발표된 후 2일 이내에 승낙 또는 포기여사를 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발표된 최종선발 명단에서 추후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결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제12조(임명과 활동기간) 회장 승인으로 최종 임명된 선수의 활동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선수의 활동기간 중 결원 또는 중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보결 선수의 활동기간은 전임 선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선발기록자료 보존과 폐기) ① 선발기록자료는 당 사무처에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리.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조정되어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감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 시까지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절단하거나 원형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완전 소각시킨다.

부 칙 (1996.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18)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1. 9.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22.)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1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11.26.)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3.20.)

제1조(경과조치)이 개정규정은 제15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 3.2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8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8. 3.15.)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9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9.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20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6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0.7.7.)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위에 따른 배점표

200점 대회		150점 대회		100점 대회		50점 대회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1	200	1	150	1	100	1	50
2	160	2	120	2	80	2	40
3	130	3	98	3	65	3	33
4	110	4	83	4	55	4	28
5	90	5	68	5	45	5	23
6	80	6	60	6	40	6	20
7	70	7	53	7	35	7	18
8	60	8	45	8	30	8	15
9	50	9	38	9	25	9	13
10	45	10	34	10	23	10	11
11	40	11	30	11	20		
12	36	12	27	12	18		
13	34	13	26	13	17		
14	32	14	24	14	16		
15	30	15	23	15	15		
16	28	16	21	16	14		
17	26	17	20	17	13		
18	24	18	18	18	12		
19	22	19	17	19	11		
20	20	20	15	20	10		